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 안 번 호	26-139

발의년월일 : 2026. 11. .

발 의 자 : 차해영, 고안경, 남해석, 배동수, 백남환, 장정희 채종민, 최은하, 한송이

1. 개정이유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생활권 내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공유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1조)

나.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공유거점의 정의를 신설하며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생활물품 공유, 유휴공간 활용, 수리·재사용 연계 등 공유 촉진사업을 구체화함(안 제6조)

라.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지정,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마.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자원순환 연계, 공유거점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바. 재정지원 대상을 공유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공유촉진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사. 공유 촉진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 11. 9 ~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를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을 “등의”로, “사용함으로써”를 “사용하거나 대여·교환·나눔·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제관련”을 “경제 관련”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관련”을 “복지 관련”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관련”을 “문화 관련”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환경관련”을 “환경 관련”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교통관련”을 “교통 관련”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거점”이란 구민이 생활권에서 물건·공간 등의 공유와 수리·재사용 등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민과 기업”을 “구민, 기업 및 단체”로, “촉진될”을 “촉진되고 공유활동이 지역경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정책을 사회연대경제, 자원순환, 1인 가구 및 지역공동체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업은”을 “기업 및 단체는”으로, “참여”를 “참여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 촉진정책)”을 “(공유 촉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을 “각 호의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구청장이”로,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1. 공유 가능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발굴과 정보 제공
2. 생활물품의 대여·교환·나눔 및 재사용 활성화
3. 공구, 생활용품, 육아용품, 문화·여가용품 등 생활물품 공유사업
4. 공공시설 및 민간 유휴공간의 공유 활성화
5.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공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지원
6. 수리·재사용·새활용 등 자원순환 활동과 공유사업의 연계
7.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험 및 주민참여 사업
8. 공유활동에 관한 온라인·오프라인 정보 제공
9. 공유 관련 기관·단체·기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유거점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권에서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거점을 설치·운영하거나 공유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을 공유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유거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구 및 생활물품 등의 대여·교환·나눔
2. 물품의 수리 및 재사용 지원
3. 공유 및 수리와 관련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공유자원 및 공유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5.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계
6. 주민의 재능·지식·경험 등의 공유활동 지원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공유거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존 공공시설 및 지역 내 민간시설을 공유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 구청장은 공유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주민모임 및 수리·재사용·자원순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1호 중 “공유단체,”를 “공유단체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촉진정책 수립과”를 “촉진정책의 수립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와 수리·재사용 등 자원순환 활동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를 “공유, 사회연대경제, 자원순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 1명”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사회연대경제조직·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유, 사회연대경제 또는 자원순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리·재사용·자원순환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교부·실적보고·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공유 촉진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1. ---------- 등의 -------- 사용하거나 대여·교환·나눔·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 「협동조합 기본법」 ----------.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 각 목-------- ----------.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가. ---------- --- 경제 관련 --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나. ---------- ---------- 복지 관련 ----------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다. ---------- ---------- 문화 관련 --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라. ---------- ------- 환경 관련 ---
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마. ---------- 교통 관련 ----------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바. ----- 제9조---------- ----------
<신 설>	5. “공유거점”이란 구민이 생활권에서 물건·공간 등의 공유와 수리·재사용 등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	② ------ 구민, 기업 및 단체--- -------- 촉진되고 공유활동이 지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역경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정책을 사회연대경제, 자원순환, 1인 가구 및 지역공동체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 기업 및 단체는 ---------- 참여하도록 노력----------.
제6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공유 촉진사업) ---------- 각 호의 사업을 ----------.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1. 공유 가능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발굴과 정보 제공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2. 생활물품의 대여·교환·나눔 및 재사용 활성화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3. 공구, 생활용품, 육아용품, 문화·여가용품 등 생활물품 공유사업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4. 공공시설 및 민간 유휴공간의 공유 활성화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공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조

	직의 육성·지원
<신 설>	6. 수리·재사용·새활용 등 자원 순환 활동과 공유사업의 연계
<신 설>	7.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험 및 주민참여 사업
<신 설>	8. 공유활동에 관한 온라인·오프라인 정보 제공
<신 설>	9. 공유 관련 기관·단체·기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 위하여 구청장이 --- 사업
<신 설>	제7조(공유거점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권에서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거점을 설치·운영하거나 공유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을 공유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유거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구 및 생활물품 등의 대여·교환·나눔
	2. 물품의 수리 및 재사용 지원
	3. 공유 및 수리와 관련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공유자원 및 공유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5.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사회연

	대경제조직과의 연계 6. 주민의 재능·지식·경험 등의 공유활동 지원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공유거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존 공공시설 및 지역 내 민간시설을 공유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협력) 구청장은 공유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주민모임 및 수리·재사용·자원순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공유단체 및 ---------- 2. --- 촉진정책의 수립 및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유와 수리·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동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6.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공유, 사회연대경제, 자원순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1. ---------- 의원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유, 사회연대경제 또는 자원순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회연대경제조직·중소기업----------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리·재사용·자원순환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교부·실적보고·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공유 촉진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가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관내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거점을 설치·운영 근거 조항 신설(임의)

나. 관련조문

- **제7조(공유거점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권에서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거점을 설치·운영하거나 공유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을 공유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강예나
연 락 처	02-3153-8314